

<의안번호 제2006 - 30호>

거창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I. 검토경과

- 가. 발의일자 : 2006년 7월 20일
- 나. 발 의 자 : 신주범 의원 외 9 명
- 다. 회부일자 : 2006년 7월 20일

II. 제안이유

- 지방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과 이를 성실히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 규범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III. 주요내용

- 의원은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기위한 윤리강령을 규정 (안 제2조)
- 의원의 윤리강령을 성실히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규정 (안 제3조)

IV. 검토의견

- 지방자치법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거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정하도록 하므로서,

- 지방의원의 유급제 실시에 따라 사람이 마땅히 행하거나 지켜야 할 기본적인 도리는 물론 보다 더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이 요구되고 있으므로 우리군의회의원의 기본입장을 윤리강령으로 정하여 스스로 지켜 이에 부응하라는 뜻이 담겨 있는 것이며,
- 이렇게 함으로써 민주주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의회 민주주의를 바로 알고 올바른 의회상 정립에 더한층 기여하게 됨

V. 참고사항

가.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 제34조3(지방의회의 의무 등)

나. 예산조치 : 불요

다. 입법예고 : 불요

참고자료

지방자치법

제34조의3 (지방의회의 의무 등) ①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해야 할 지방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②지방의회는 소속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4.28]

거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I. 검토경과

- 가. 발의일자 : 2006년 7월 20일
- 나. 발 의 자 : 신주범 의원 외 9명
- 다. 회부일자 : 2006년 7월 20일

II. 제안이유

- 공직선거법 및 경상남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의 개정으로 거창군의회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 정수를 재조정, 원활한 위원회 활동을 도모하고자 함

III. 주요내용

- 상임위원회 및 상임위원회별 위원정수를 조정함(안 제2조)

현 행		조 정 안	
위 원 회	정 수	위 원 회	정 수
의회운영위원회	5명	폐 지	
총무위원회	6명	총무위원회	5명 이내
산업건설위원회	6명	산업건설위원회	5명 이내

-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사항을 조정함(안 제3조)
 - 의회사무과 : 의회운영위원회 ⇨ 총무위원회(10개 부서)
 - 거창사건관리사업소 : 총무위원회 ⇨ 산업건설위원회(8개부서)
- 상임위원의 임기를 명확히 함(안 제5조)
-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로 개정함(안 제7조제5항)

IV. 검토의견

- 현행 3개 상임위원회를 제5대 개원과 더불어 의회의 변화된 모습으로 의회운영위원회를 폐지하고 실질적인 의회운영에 필요한 총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로 최소한의 2개 상임위원회로 조정하였으며 상임위원회 정수에서도 5명 이내로 정함으로써 상임위원회간 위원수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며,
- 의회운영위원회의 폐지로 그동안 의회운영위원회 소관부서였던 의회사무과를 총무위원회 소관부서로 하고 현행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였던 거창사건관리사업소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로 한 것은 적절한 조정으로 판단되나,
- 의회운영의 전반에 관한 사항을 총무위원회에 귀속시킴으로써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전위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별도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의회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로 명칭을 개정 한 것으로서 관련법 개정 등으로 인하여 본 조례안의 개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V. 참고사항

가.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 제50조제1항
- 경상남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제2조
- 지방자치법 제50조제1항

나. 예산조치 : 불요

다. 입법예고 : 불요

참고자료

공직선거법

제23조 (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 ①시·도별 자치구·시·군의회의원의 총정수는 별표 3과 같이 하며, 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는 당해 시·도의 총정수 범위 내에서 제24조(선거구획정위원회)의 규정에 따른 당해 시·도의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자치구·시·군의 인구와 지역대표성을 고려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한다.

제26조 (지방의회의원선거구의 획정) ②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는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획정하되, 하나의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정수는 2인 이상 4인 이하로 하며, 그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는 시·도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5.8.4>

경상남도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제2조 (선거구 및 선거구별 의원정수) 「공직선거법」 제23조제1항 및 제2항, 제26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시·군의회의 의원정수 별표 1과 같고, 시·군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개정 2006. 1.12>

[별표1]

의원 정수

군	의원정수			비고
	계	지역구	비례대표	
거창군	10	9	1	

지방자치법

제50조 (위원회의 설치) ①지방의회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의안번호 제2006 - 32호>

거창군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I. 검토경과

- 가. 발의일자 : 2006년 7월 20일
- 나. 발 의 자 : 신주범 의원 외 9명
- 다. 회부일자 : 2006년 7월 20일

II.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38조·제39조·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4의 규정에 의거 거창군의회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III. 주요내용

- 거창군의회회 회기의 연간 총회의일수를 80일 이내로 규정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 정례회의 회기는 연2회를 합하여 35일 이내로, 임시회 회기는 15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본회의 의결로 정함(안 제3조)
-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은 매년 7월 10일, 제2차 정례회의 집회일은 매년 11월 25일로 함(안 제4조)
- 제1차 및 제2차 정례회와 임시회의 회기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IV. 검토의견

- 의회의 총회의일수 및 회기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본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으로서 연간 총회의일수를 80일로 하고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한 내용과 정례회의 회기를 연2회를 합하여 35일 이내로 한 것은 회기운영의 묘를 살리면서 융통성 있게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한 개정으로 판단되며,
- 제1차 정례회를 현행 매년 6월 15일 하던 것을 7월 10일로 조정한 것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4의 규정과 지방재정법 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맞게 조정이 된 것으로서 현실에 맞는 개정으로 판단됨

V. 참고사항

가.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 제38조 ,제39조, 제41조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의4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

나. 예산조치 : 불요

다. 입법예고 : 불요

참고자료

지방자치법

제38조 (정례회) ①지방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②정례회의 집회일 기타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9.8.31]

제39조 (임시회) ①총선거후 최초로 집회되는 임시회는 지방의회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이 지방의회의원 임기개시일부터 25일 이내에 소집한다.<개정 1994.3.16, 2006.4.28>

②지방의회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의장 및 부의장이 사고로 임시회를 소집할 수 없을 때에는 의원 중 연장자의 순으로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06.4.28>

③임시회의 소집은 시·도에 있어서는 집회일 7일전에,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집회일 5일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1조 (개회·휴회·폐회와 회의일수) ①지방의회는 개회·휴회·폐회와 회기는 지방의회가 의결로 이를 정한다.

②삭제 <2005.1.27>

③연간 회의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6.4.28>

제125조 (결산)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감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에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9.8.31>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의4 (정례회의 집회일 등) ①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중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7월중에, 제2차 정례회는 11월·12월중에 집회하여야 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9월·10월중에 집회할 수 있다.<개정 2000.7.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안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0.7.1>

1. 제1차 정례회는 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승인 및 기타 지방의회에의 부의안건
2. 제2차 정례회는 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지방의회에의 부의안건

③법 및 이 영이 정한 사항 외에 정례회의 집회일과 회기 기타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 (세입·세출결산서 등의 제출)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세입·세출결산서에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이를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세입·세출결산서에는 세입·세출결산보고서, 계속비결산보고서, 지방자치단체의 채권·채무에 관한 보고서,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무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속비결산보고서는 그 계속비의 연부액의 최후의 지출이 속하는 연도의 세입·세출결산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지방자치단체의 결산의 작성에 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이 그 기준을 정한다.

<의안번호 제2006 - 33호>

거창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I. 검토경과

- 가. 발의일자 : 2006년 7월 20일
- 나. 발 의 자 : 이수정 의원 외 9명
- 다. 회부일자 : 2006년 7월 20일

II. 제안이유

-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의 심도 있는 감사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행할 수 있도록 개정하기 위함.

III. 주요내용

- 군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본회의 또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행할 수 있는 것을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행할 수 있도록 개정함(안 제2조)

IV. 검토의견

- 군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본회의 또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행하도록 규정한 것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다만, 본회의 의결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로 개정한 것은 의원의 전문적인 지식과 노하우로 심도 있는 감사를 하게끔 한 것으로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V. 참고사항

가.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 제36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의2

나. 예산조치 : 불요

다. 입법예고 : 불요

참고자료

지방자치법

제36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①지방의회는 매년 1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도에 있어서는 10일,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7일의 각 범위 내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본회의의결로 본회의 또는 위원회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조사를 발의하고자 할 때에는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가 있어야 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의2 (운영규정) 법 및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감사 또는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의안번호 제2006 - 34호>

거창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I. 검토경과

- 가. 발의일자 : 2006년 7월 20일
- 나. 발 의 자 : 이수정 의원 외 9명
- 다. 회부일자 : 2006년 7월 20일

II.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32조제1항 제3호 및 거창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의 개정에 따라 “회기수당”이 “월정수당”으로 전환됨으로써
- 예산결산검사 위원에 대한 여비 및 일비의 지급기준을 재조정하고자 함.

III. 주요내용

- 제명 “거창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를 “거창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띄어 쓰기 기준에 맞게 함
- 법령명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법령명 앞뒤 낫표(「)를 사용하여 구분되게 함
 - ⇒ “지방자치법”을 “「지방자치법」”으로 (안 제1조)
 - ⇒ “지방공기업법”을 “「지방공기업법」”으로 (안 제7조)
 - ⇒ “지방자치법시행령”을 “「지방자치법시행령」”으로 함(안 제9조)
- 위원에게 지급되는 일비는 1일당 10만원을 지급함(안 제13조)

IV. 검토의견

- 거창군결산검사 위원에게 지급되는 근거의 현행 관련조례가 개정됨으로써 불가피하게 개정하는 것으로서 여비는 거창군 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의 기준을 적용하고 일비는 현행 회기수당에 상응하는 1일당 10만원으로 개정한 것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V. 참고사항

가.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 제32조제1항제3호
- 거창군의회의회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조례 제2조제2항

나. 예산조치 : 불요

다. 입법예고 : 불요

참고자료

지방자치법

제32조 (의원의 의정활동비등) ①지방의회의원에게 다음 각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3.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거창군의회의회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제 2조 (의정활동비·월정수당 지급)

② 의정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거창군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I. 검토경과

- 가. 발의일자 : 2006년 7월 20일
- 나. 발 의 자 : 이수정 의원 외 9명
- 다. 회부일자 : 2006년 7월 20일

II. 제안이유

- 거창군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직인에 대하여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직인을 각인하여 의회내의 공문서에 사용하도록 하기 위함.

III. 주요내용

- 제명 “거창군의회공인조례”를 “거창군의회 공인 조례”로 띄어쓰기에 맞게 개정함
- 거창군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 직인의 종류에 특별위원회 위원장 추가
 -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함(안 제2조제2항제2호)
- 공인의 규격에 각 상임위원장 직인의 규격 규정함(안 제4조의 별표)
 - “거창군의회 특별위원장의 직인 : 1.8cm”를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특별위원회 위원장 직인 : 1.8cm”으로 (안 제4조의 별표)

IV. 검토의견

- 거창군의회에서 사용되는 공인 중 대내에 사용되는 특별위원회 위원장 직인을 각인하여 사용토록 규정하고 상임위원회 직인 규격과 함께 규정하므로서 의회운영사무에 원할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본 조례의 개정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V. 참고사항

- 가. 근거법령 : 없음
- 나. 예산조치 : 불요
- 다. 입법예고 : 불요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 토 보 고 서

I. 검토경과

- 가. 발의일자 : 2006년 7월 20일
- 나. 발 의 자 : 신주범 의원 외 9명
- 다. 회부일자 : 2006년 7월 20일

II.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50조의2 및 거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로 개정하기 위함.

III. 주요내용

- 제명 “거창군의회회의규칙”을 “거창군의회 회의 규칙”으로 띄어 쓰기에 맞게 개정함
- 법령명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법령 명 앞뒤 낫표(「」)를 사용하여 구분되게 함
⇒ 지방자치법을 「지방자치법」으로 개정함(안 제1조)
- 의회운영위원회를 각 상임위원회로 개정함(안 제3조, 제16조, 제20조의3, 제73조)
- 명백하지 아니한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 협의를 거쳐 의장이 결정함(안 제20조)
-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로 개정함(안 제70조, 제71조, 제72조, 제82조, 제85조, 제86조)

IV. 검토의견

- 현행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관련 안건에 대한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 조항인 의원의 의석배정, 의사일정 작성, 위원회의 제출의안, 경호 관련 및 명백하지 아니한 안건에 대해서 의회운영위원회가 폐지된데 따른 그 역할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 하도록 적정하게 조정하였으며,
- 의원의 징계와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두는 징계 자격특별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로 명칭 개정으로 인하여 관련 조항에 자구를 개정한 것임

V. 참고사항

가.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 제50조의 2(윤리특별위원회)
- 거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특별위원회)

나. 예산조치 : 불요

다. 입법예고 : 불요

참고자료

지방자치법

제50조의2 (윤리특별위원회)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본조신설 2006.4.28]

거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3항 의회는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의안번호 제2006 - 37호>

거창군의회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 토 보 고 서

I. 검토경과

- 가. 발의일자 : 2006년 7월 20일
- 나. 발 의 자 : 신주범 의원 외 9명
- 다. 회부일자 : 2006년 7월 20일

II. 제안이유

- 거창군의회의원 신분증의 색상 등 규격을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여 활용하고자 함

III. 주요내용

- 제명 “거창군의회의원신분증규칙”을 “거창군 의회의원 신분증 규칙”으로 띄어쓰기에 맞게 개정함
- 신분증의 규격 등 기재사항은 별지와 같이 함(안 제3조제1항)
- 신분증의 색상은 연청색으로 함(안 제3조제2항)

IV. 검토의견

- 거창군의회의원 신분증의 크기 사진규격 등 기재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색상 또한 황색에서 연한 청색으로 바뀌 신선하고 생동감 있는 신분증으로 변경하여 군민으로부터 변화된 모습을 보이면서 새로운 의정상을 구현하는 역동적인 의회운영에 이바지 할 것으로 판단됨.

V. 참고사항

- 가. 근거법령 : 없음
- 나. 예산조치 : 불요
- 다. 입법예고 : 불요

<의안번호 제2006 - 38호>

[거창군의회 사무기구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 토 보 고 서

I. 검토경과

- 가. 발의일자 : 2006년 7월 20일
- 나. 발 의 자 : 신주범 의원 외 9명
- 다. 회부일자 : 2006년 7월 20일

II. 제안이유

- 거창군의회 위원회 조례개정으로 소속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 등을 조정하기 위함

III. 주요내용

- 제명 “거창군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을 “거창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으로 띄어쓰기에 맞게 개정함
- 전문위원별 직급 [별표]를 조정함(안 제3조)

위원회 명	직 위	직 렬	직 급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행정	지방행정사무관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행정·농업 토목·건축	지방행정·농업· 토목·건축사무관
특별위원회	전문위원	행정	지방행정주사

IV. 검토의견

- 거창군의회 위원회 조례개정으로 소속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 원활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에 총무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에서의 전문위원 직렬 및 직급은 현행과 같이 하고,
- 현행 의회운영위원회가 폐지됨으로써 6급 전문위원을 특별위원회에 둠으로써 의회운영에 효율화를 기하는 것은 적절한 개정으로 판단됨

V. 참고사항

가. 근거법령

- 거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 불요

다. 입법예고 : 불요

지방자치법

제50조 (위원회의 설치) ①지방의회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위원회는 소관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의 **2종**으로 한다. <개정 1991.12.31, 2006.4.28>

③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개정 1991.12.31>

제51조의2 (전문위원) ①위원회에는 위원장과 위원의 자치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원 아닌 전문지식을 가진 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전문위원은 위원회에서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그 밖에 소관 사항과 관련하여 검토보고 및 관련자료의 수집·조사·연구를 행한다.

③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과 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6.4.28]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19565호>

제10조의3 (의회사무기구의 설치기준 등) ①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시·도의 의회사무처, 시·군·구의 의회사무국 또는 의회사무과의 설치기준과 의회사무처장, 의회사무국장·의회사무과장등 의회사무기구 공무원의 직급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시·도 의회사무처의 하부조직으로 담당관을 설치할 수 있으며, 시·도 및 시·군·구의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과 정수는 별표 5의 2와 같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은 소속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소속위원회위원장의 지휘를 받으며, 그 외의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의회사무처장 또는 의회사무국장·의회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1998.8.31>

④시·도 및 시·군·구의 의회사무기구에 두는 담당관과 전문위원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이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1999.9.9, 2000.12.30> [본조신설 1997.2.4]

[별표 5-2]

<시·군·자치구>

지방의원 수	전문위원		
	총 정수	5급	6급
7명	2명 이내	1	1
9명 이하	2명 이내	2	
15명 이하	3명 이내	2	1
	이하생략		

거창군의회 포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 토 보 고 서

I. 검토경과

- 가. 발의일자 : 2006년 7월 20일
- 나. 발 의 자 : 이수정 의원 외 9명
- 다. 회부일자 : 2006년 7월 20일

II. 제안이유

- 거창군의회 상임위원회의 의회운영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본 규칙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III. 주요내용

- 제명 “거창군의회포상규칙”을 “거창군의회 포상 규칙”으로 띄어쓰기에 맞게 개정함
- 포상절차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것을 각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개정함(안 제9조제2항)

IV. 검토의견

- 거창군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에 관하여 규정한 본 규칙에 포상대상자 심의 시 포상절차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심의하던 것을 의회운영위원회 폐지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 협의를 거치도록 한 내용으로 적정함

V. 참고사항

- 가. 근거법령 : 없음
- 나. 예산조치 : 불요
- 다. 입법예고 : 불요

거창군의회연구단체지원규칙일부개정규칙안

검 토 보 고 서

I. 검토경과

- 가. 발의일자 : 2006년 7월 20일
- 나. 발 의 자 : 이수정 의원 외 9명
- 다. 회부일자 : 2006년 7월 20일

II. 제안이유

- 거창군의회위원의 정책개발과 군정의 연구 등 관심분야의 연구단체 및 지원에 따른 심의를 의회운영위원회가 실시하여 왔으나 의회운영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본 규칙 관련 조항을 개정하기 위함

III. 주요내용

- 제명 “거창군의회의원연구단체지원규칙”을 “거창군의회의원 연구단체지원 규칙”으로 띄어쓰기에 맞게 개정함
- 연구단체의 등록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개정함(안 제3조)

IV. 검토의견

- 거창군의회 의원이 소속 상임위원회를 초월하여 관심분야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연구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에 있어 등록된 연구단체에 예산지원을 위한 심의시 현행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하던 것을 폐지됨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개정한 내용으로 적정함

V. 참고사항

가. 근거법령 : 없음

나. 예산조치 : 불요

다. 입법예고 : 불요

<의안번호 제2006- 28호>

[거창군 이장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06. 7. 18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06. 7. 24

2. 개정이유

- 일제시대 잔재로 존치되어온 주상면 1구, 2구 등의 명칭을 마을의 역사와 전통을 살린 명칭으로 변경하여
- 행정리명과 자연마을의 명칭을 일치함으로써 대외적으로 명칭의 혼란을 극복하고, 대내적으로 주민화합과 단결을 유도하고자 함.

3. 주요골자

법정리명	현행	변경(안)	법정리명	현행	변경(안)
도평리	도평1구	도평 (道坪)	성기리	성기1구	원성기 (元聖基)
	도평2구	상도평 (上道坪)		성기2구	정동 (停洞)
연교리	연교1구	임실 (任實)		성기3구	송희 (松希)
	연교2구	연교 (連橋)	거기리	거기1구	거기 (渠基)
내오리	내오1구	오산 (鰲山)		거기2구	장포 (長浦)
	내오2구	오류동 (五柳洞)		거기3구	고대 (古垈)
완대리	완대1구	완수대 (玩水臺)	남산리	남산1구	원남산 (元南山)
	완대2구	도동 (道洞)		남산2구	포덕동 (飽德洞)
	완대3구	넘터		남산3구	보광 (寶光)

4. 참고사항

-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 예산조치 : 해당없음.
- 입법예고('06. 5. 15 ~ 6. 3) 결과 : 의견제출 없음.

5. 검토의견

- 동 조례안은 일제의 식민지 정책의 필요에 의해 각 행정마을명을 법 정리명에 붙여 1구, 2구, 3구 등으로 나누어 사용되었으나 해방 이후 지금까지 그대로 사용되고 있는 행정마을명을 역사와 전통을 가진 자연 마을명으로 변경·사용하기 위하여 동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 먼저 개정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제 4항 및 제5항에 근거하고 있으며 즉 ‘리의 구역은 자연의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에 의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폐지·분할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동리에 있어서는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동·리를 따로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개정과 관련하여 법령에 별다른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됨.
- 그러나 개정의 이유와 주요내용이 행정마을 명칭을 개정하려는 것이므로 우선적으로 명칭과 가장 관련이 깊은 조례인 「거창군 리명칭 및 구역확정에 관한 조례」를 개정한 후 후속적인 조치로써 관련조례인 「거창군 이장정수 조례」 상의 비고란에 표시되어 있는 행정 마을 명을 변경시키는 것이 타당함에도

- 이장의 정수인원은 增減변동이 없는 현실에서 「거창군 이장정수 조례」를 개정하여 행정마을 명칭을 개정·공포토록 하는 것은 별도의 설명이 필요하며
- 또한 「거창군 리명칭 및 구역확정에 관한 조례」와 「거창군 이장정수 조례」는 각 조례 제1조(목적)에서 알 수 있듯이 「지방자치법」 제4조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4조에 의해 제정되었고, 조례내용이 상호 밀접하므로 이를 통합·운영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이 필요하며
- 특히 관내의 지명 제정이나 변경, 기타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은 비록 지방자치법에 의해 변경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거창군 지명위원회’의 검토를 거치는 것이 좋을 것으로 검토됨
- 끝으로 동조례안은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와 동 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법예고 사항 등을 철저히 이행하여 상위법령 저촉사항이나 관련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므로 신·구조문 대비표 개정안 내용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그러나 이번 행정마을명이 개정됨에 따라, 향후 지도 및 군도 작성, 마을 이정표, 군지, 각종 공부 등 재정비가 뒤따라야 할 것임.

<의안번호 제2006- 29호>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06. 7. 18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06. 7. 24

2. 개정이유

- 행정기관의 주 40시간 근무제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특별휴가 제도를 일부 조정하며,
- 민원편의를 위하여 점심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복무관련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 가. 주 40시간 근무제의 실시 등(안 제13조).
 - 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 시간을 40시간으로 하고, 직무의 성질 등을 감안하여 1시간의 범위 안에서 점심 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나. 시간외근무 등을 명할 수 있는 요건 완화(안 제15조).

- 민원편의 등 공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간외근무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함.

다. 근무시간 및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는 기관 확대(안 제16조).

- 직무의 성질상 상시 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라. 특별휴가의 조정(안 제23조).

- 특별휴가 중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 휴가를 무급으로 하고, 포상휴가· 장기재직 및 퇴직준비 휴가를 폐지하며,
- 경조사와 관련된 특별휴가로는 본인의 결혼, 배우자의 출산, 배우자·부모·조부모·외조부모·자녀의 사망과 관련된 특별휴가를 인정하되, 휴가일수를 축소함.

4. 참고사항

○ 관계법규

- 「지방공무원법」 제59조(위임규정)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18894호 : 2005. 6. 30개정)

○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 표준안 시달 : 2005. 7. 15

※ 행정자치부 지방공무원제도팀-1619호)

○ 예산조치 : 해당없음

○ 입법예고('06. 5. 11~ 5. 31) : 의견제출 없음.

5. 검토의견

- 동조례안은 2005년 7월 1일부터 행정기관의 주 40시간 근무제가 전면시행에 따른 근무일수 감소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조사 특별휴가 제도를 일부 조정하고,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점심시간의 탄력적 운영 및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할 시에는 시간외 근무 등을 명할 수 있도록 공무원의 복무관련 제도를 정비하기 위한 후속적인 조치로써 행정자치부의 표준조례안을 근거로 개정하고자 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먼저 조례개정과 관련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법령 등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이를 입법예고 하도록 한 부분에 있어서는 '06. 5. 11부터 5. 31까지 입법예고한 사실이 있었으며
- 개정조례안의 조항과 관련하여 제13조, 제15조, 제16조는 표준안에 의해 개정된 사항으로 별다른 저촉사항이 없었으며, 제23조(특별휴가) 부분에서는 표준안과 이미 시행중에 있는 경남도청 및 타시군의 복무조례 내용을 참조하여 전국공무원 노동조합 거창군지부의 협의를 통하여 조정된 안이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나
 - 경조사에서 본인의 결혼인 경우는 표준안, 지부안, 경남도 및 17개시군이 7일로 되어 있으나 5일로 정한 부분과
 - 경조사에서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사망의 경우에는 표준안, 지부안, 경남도 및 17개시군이 5일로 되어 있으나 7일로 정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며
- 개정복무조례중 제26조(겸업금지), 제27조(정치적 행위)의 삭제조치는 이미 상위법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명기되어 있으므로 하위법인 조례에서 이를 또다시 재론할 이유가 없음을 알고 비록 기존조레이지만 이번 일부 개정조례안 제출시에 함께 정비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아주 심도있게 분석한 결과로써 타당하다고 사료됨. - THE END -

거창군리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리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거창군리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를 “거창군리명칭 및 구역
 획정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중 “별표”를 “별표 1”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이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이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
 다

부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폐지조례) 이 조례는 시행과 동시에 「거창군 이장정수 조례」 는 이를 폐
 지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거창군리명칭및구역획정에관한조례</u> 제2조(리의 명칭과 구역) --- 별표--- <신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설></p>	<p><u>거창군리명칭및구역획정 등에관한조례</u> 제2조(리의 명칭과 구역) --- 별표1--- 제3조(이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이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은 별표2와 같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①(시행일) (현행과 같음) ②(폐지조례) 이 조례는 시행과 동시에 「거창군 이장정수 조례」 는 이를 폐지한다.</p>